



Deloitte Newsletter

딜로이트 주요 서비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전문 서비스

BEPS 로 인한 납세자 불확실성 제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국제조세 전문가 TFT 를 구성, BEPS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본 법인 세무자문본부의 BEPS 관련 서비스를 집중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는 고객, 사업의 기능, 무형자산의 이동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고객과 접촉할 수 있고, 사업 기능을 분리,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지적 재산을 실제 사업기능이 수행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각국의 조세체계간 차이를 발생시키고 미비한 조세조약과 결합되어 일부 글로벌 대기업에게는 소득이 창출되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다양한 조세회피 방법을 활용해 과세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한 결과, 총 조세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체제와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득을 이전하고(Profit Shifting) 절세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결과적으로 세원 기반이 감소하거나 소멸하는 것(Base Erosion)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합니다.

BEPS AP 의 권고안, 글로벌 기업 세무관리에 직접적인 영향 줄 듯

하지만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취한 국제사회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해 세원 잠식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BEPS 방지의 필요성이 언급됐고, 2012년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OECD의 BEPS 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모스크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15개의 Action Plan이 선정됐고, 2014년 9월 16일 2014년 1차 결과물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OECD 회원국, 가입 후보국, 그리고 G20로 구성된 OECD 재정위원회(CFA)는 이 1차 결과물을 채택했습니다.

BEPS AP가 제시한 권고안은 각국의 조세제도, 조세조약의 개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4년에 결과물은 2015년 결과물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1차로 발표된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초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2015년 2차 결과물은 1차 결과물의 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BEPS AP의 권고안은 글로벌 기업의 세무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에 언급할 기업들은 BEPS 프로젝트로 인해 세무상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국외에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이며, 두 번째는 국외 관계사와 거래가 많은 기업, 특히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국외 관계회사에게 관리 수수료(management fee), 로열티(royalty)를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국외 관계사에게 사업기능을 다양하게 분산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며 네 번째는 법적 형태가 파트너십, 조합 등 도관형태로 판단될 수 있는 국외 관계사를 가진 기업, 다섯 번째는 국외 관계사와 신종 자본증권 등 성격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거래한 기업, 여섯 번째는 자회사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내부금융의 규모가 큰 기업과 시장국에서 세법상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AP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그 영향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1차 결과물에 포함된 권고사항에 기초한다면, 납세자가 받을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먼저, 고정사업장의 적용 확대로 인해 시장국에서의 과세의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의 기능을 분리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글로벌 대기업이나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시장국에서의 과세의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장국 밖에서 VAT 대상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시장국에서의 VAT 과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혼성금융상품이나 혼성실체의 성격분류와 관련된 업무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넷째, 무형자산의 이전 시 정상가격 평가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다섯째, 조세조약 상 혜택을 적용하기 위하여 LOB, PPT 요건 충족을 검토하는 업무부담이 증대될 것입니다. 여섯째, 강화된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로 인해 납세협력의무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과세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세무와 재무전략 역량 갖춘 전문가 확보

TFT는 글로벌 세무와 재무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모델 최적화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전문가, 이전가격 계획수립과 이전가격 분쟁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리고 조세정책의 집행과 연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국제조세 분야별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탁월한 국제조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BEPS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다양한 국제조세의 서비스라인을 포괄하는 TFT를 구성, BEPS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TFT는 글로벌 세무와 재무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모델 최적화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전문가, 이전가격 계획수립과 이전가격 분쟁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그리고 조세정책의 집행과 연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EPS로 인한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제세무전략 논의, 고안, 이행에 관한 자문: 고객의 사업목표와 조화되는 글로벌 세무·재무전략의 논의, 고안,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합니다.
- 사업모델전환(BMO) 서비스: 직접세와 간접세 측면을 모두 고려해 글로벌 공급망과 지적 재산 관리가 변화될 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 이전가격 계획수립과 문서화 작업 자문: TP 문서의 표준화와 통합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사업운영과 국제조세 계획수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문업무를 제공합니다.

- 국제적 간접세 신고 및 보고 서비스: 딜로이트는 고객에게 일관되고 효율적인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곳에 간접세 신고센터를 두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 걸쳐 간접세 신고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 정보공유: BEPS 프로젝트의 경과와 결과물의 내용을 적시에 제공하며, 주요 이슈를 고객과 공유하여 개정될 제도로 인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정보공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Contact Point

김태훈 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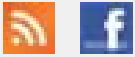
Deloitte Tax R&D

Director

02 6676 2848

taehoonkim@deloitte.com

[Deloitte Korea](#) | [RSS](#)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150-945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원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원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